

대법원

제
1
부

결

사건 2008두1418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나승권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 7. 17. 선고 2008누806 판결

판결선고 2010. 11.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주문

1. 이주대책 기준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 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근거 법령인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 기준일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인 1999. 11. 25.이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고, 원고가 그 후 2005. 4.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설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일인 2000. 7. 10.이나 전 소유자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2. 2. 1.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주대책 기준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609 판결은 이 사안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두 사안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상이함)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 제4호에서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나 사업예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이주

대책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해석 및 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받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판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